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3일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고, 2021년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 금액을 명시하여 조례 취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교육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 제시 및 전문교육기관의 위탁운영 규정 신설
(안 제6조)
2.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30만원으로 명시(안 제9조)
3. 고령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 신설(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기존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에서
교통안전 교육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대해

교통비 지원 30만원을 명시

안 제10조에서는 차량부착을 위한 고령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집계를 보면

70대와 80대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각각 2배,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군으로서는 조례 개정은 시기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자진 반납 등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제도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관계법령)

「교통안전법」